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69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 : 윤호중・양부남・위성락

문진석 · 김종민 · 정을호

김영환 · 소병훈 · 최기상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세 납부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비영리내국법인의 공익적 성격의 사업 수익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제외하여 주고 있음.

한편,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하여 무자본 특수 법인으로 설립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법인 세 과세대상이어서 공개시장조작이나 외화자산 매각 등의 금융활동으 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과거에 민간은행으로 출발하였거나 중앙은행에 민간주주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인데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는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법」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 행을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82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법인세 부과 면제) 한국은행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8조의2(법인세 부과 면제) 한
	국은행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